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: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·개정 이유: 누전경보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가. 외함에 대한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-94 시험 신설(제3조제4호나목)

나. 전선당김 시험 신설(제3조제16호)

다. 전자계전기 인증받은 제품 사용(제4조제3호마목)

라. 외부 환경 등에 대한 적응성 강화(제11조, 제11조의2, 제28조의2, 제34조제2호, 제34조의2)

마. 표시내구성 시험 신설(제38조의2)